

수원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1가단532266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B

원고보조참가인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드림

담당변호사 정재엽, 안예은

피 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기

담당변호사 유진희

변 론 종 결 2022. 1. 21.

판 결 선 고 2022. 2.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9. 2. 25. 접수

제180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주식회사 D으로부터 다음 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49,100,000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 순번 | 대출일자          | 대출금액        | 약정금리    | 연체금리    | 대출기간 |
|----|---------------|-------------|---------|---------|------|
| 1  | 2017. 11. 22. | 30,000,000원 | 연 21.9% | 연 27.9% | 12개월 |
| 2  | 2018. 3. 9.   | 3,000,000원  | 연 19.5% | 연 24%   | 36개월 |
| 3  | 2018. 5. 24.  | 8,000,000원  | 연 19.5% | 연 22.5% | 48개월 |
| 4  | 2018. 7. 12.  | 8,100,000원  | 연 19.9% | 연 22.9% | 48개월 |

2) 원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2019. 6. 18. 주식회사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을 양수하고, 2019. 8. 14. 주식회사 D으로부터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원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보조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414846호)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9. 25. ‘원고는 보조참가인에게 49,884,526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9.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9%의, 2,614,993원에 대하여 2019.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5%의, 7,549,400원에 대하여 2019.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9. 10. 16.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부동산 처분행위

1) 원고는 2014. 3. 31.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그 명의로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E)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 2014. 4. 11. 매각대금을 납입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8. 8. 7.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2018드합51437호)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피고 간에 2018. 10. 25.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1. 피고와 원고는 이혼한다.
2. 피고와 원고는 재산분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8. 11. 25.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성립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8. 11. 25.까지 3,000,000원을 지급하되, 만일 원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8. 11.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 반려건(F)은 피고의 소유로 한다.

라. 위에서 정한 것 외에 피고와 원고는 각자 자신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시키고, 각 채무도 각 명의자가 책임지고 변제하는 것으로 한다.

3. 피고와 원고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서로 상대방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손해배상, 부양료 등 돈 지급에 관한 일체의 추가 청구 또는 재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이의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을 제기하지 않는다(부제소합의).

3)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9. 2. 25. 접수 제18086호로 2018. 10. 25. 재산분할(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소송의 경과

1) 보조참가인은 2020. 5. 2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채권액인 57,235,681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재산분할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20. 9. 11. 개인회생 신청(수원지방법원 2020개회162320호)을 하였고, 2020. 12. 1.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다음,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고 이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부인의 소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 8호증, 을 제1,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 및 보조참가인의 주장

이 사건 재산분할은 원고의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한 것이거나, 적어도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재산분할로서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 소정의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3.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가 포함되는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써,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한하여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0호증, 을 제2 내지 6,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산분할은 원피고의 공동재산의 분배, 위자료 등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재산분할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의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 따른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및 보조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가 혼인 이후인 2014. 4. 11.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그 매각대금은 피고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 1 생략), 피고의 급여소득이 입금되는 계좌이자 마이너스 통장이다.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서 출금되거나, 피고가 주식회사 H(변경전 상호 : I 주식회사) 및 J 주식회사로부터 그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으로 납부된 것이고, 이후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변제 또한 대부분 피고가 실질적으로 출연하여 부담하였다(매달 상환되는 각 대출원리금은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되었고, 주식회사 H에 대한 잔여 대출금 248,668,002원은 피고가 2015. 12. 23. K은행으로부터 새로 대출받은 금원으로 변제되었다). 다만 원고도 혼인 기간 동안 이 사건 계좌로 일부 금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고, 이 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형성 또는 유지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원피고의 공동재산에는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가) 피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을 통하여 적극재산인 360,000,000원<sup>1)</sup>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와 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2,175,886원<sup>2)</sup> 상당의 예금, 7,021,083원<sup>3)</sup> 상당의 보험해약환급금, 시가 미상의 자동차 1대를 보유하게 되었으나, 한편 소극재산인 K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232,280,000원, J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채무 20,096,132원, G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sup>4)</sup> 80,000,000원도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가 실질적으로 분할 받은 재산의 가치는 그 차액인 36,820,837원 정도에 불과하다.

나) 반면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원고가 보유하기로 한 그 명의의 예금, 보험해약환급금, 자동차 등 다른 적극재산의 내역 및 액수를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그대로 부담하기로 한 그 명의의 이 사건 각 대출금채무 등이 원피고 간의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라거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을 뿐 아니라(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참조), 원고는 제4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소극재산으로는 혼인 전부터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만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각 대출금채무가 혼인 기간 도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원고의 진술에 비추어 이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혼인 전에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의 변제상환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이는 원피고 사이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sup>5)</sup>

3)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대금은 대체로 피고가 실질적으로 출연하거나 부담하였고(원고 역시 제5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피고가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는 혼인 기간(약 4년 7개월) 동안 Q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급여소득을 얻었으며,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대금과 관련된 대출원리금, 보험금, 카드대금을 포함한 생활비는 피고의 급여소득이 입금되는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되어 충당된 점, 원고도 이 사건 계좌로 일부 금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으나 출금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당시 '원고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 명의의 부채가 증가하는 등 원고가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던 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외에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73105 판결), 원고는 유책배우자(부정행위)로서 피고에게 위자료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위 소송 당시 원고를 상대로 10,000,000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다가, 이 사건 재산분할 외에 3,000,000원만을 지급 받되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는바, 이 사건 재산분할에는 이혼에 따른 위자료도 일부 고려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원피고 간 혼인 기간,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재산분할에 포함된 부양적위자료적 성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보기 어렵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서영

[별 지]

##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수원시 영통구 

|  |  |  |
|--|--|--|
|  |  |  |
|--|--|--|

 동

철근콘크리트벽식조 철근콘크리트평, 경사지붕 17층 아파트

1층 831.0252㎡

2층 777.9882㎡

3층 777.9882㎡

4층 777.9882㎡

5층 777.9882㎡

6층 777.9882㎡

7층 777.9882㎡

8층 777.9882㎡

9층 777.9882㎡

10층 777.9882㎡

11층 777.9882㎡

12층 777.9882㎡

13층 777.9882㎡

14층 777.9882㎡

15층 777.9882㎡

16층 777.9882㎡

17층 777.988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2 -

위 집합건물 중 제3층  호 철근콘크리트벽식조 101.9552㎡.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30365.9분의 59.0217. 끝.

1)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K은행 1,516,846원 + L은행 159,030원 + G은행 500,000원 + M조합 10원

3)= N 3,989,900원 + O 847,455원 + O 1,375,200원 + P 808,528원

4) 마이너스 통장인 이 사건 계좌와 관련된 대출금채무이다.

5) 반면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K은행, J 주식회사, G은행에 대한 각 대출금채무는 대출시거나 그  
사용처에 비추어 공동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